

◎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3-22호

「국유재산법」 위반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을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태안해양경찰서장

「국유재산법」 위반자 변상금 사전통지서

(앞쪽)

대상자	성명 조 * 순	생년월일 41.09.20.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길10	전화번호 010-85**-****

부과내용

재산의 표시	점유 면적 (㎡)또는 사용수익 유형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			변상금 산출		비고	연간변상금	
		재산가액	사용요율	연간 사용료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액 (원)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39-5	전 797	58	2,035,800	20/1,000	16,955	18.08.02.~12.31.	20,346	152일	22,880
두야리 339-8	대 8,278	7	254,100	20/1,000	2,116	18.08.02.~12.31.	2,539	152일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39-5	전 797	58	2,140,200	20/1,000	42,804	19.01.01.~12.31.	51,364	365일	57,760
두야리 339-8	대 8,278	7	266,700	20/1,000	5,334	19.01.01.~12.31.	6,400	365일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39-5	전 797	58	2,186,600	20/1,000	43,732	20.01.01.~12.31.	52,478	365일	59,030
두야리 339-8	대 8,278	7	273,000	20/1,000	5,460	20.01.01.~12.31.	6,552	365일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39-5	전 797	58	2,401,200	20/1,000	2,368	21.01.01.~01.18.	2,841	18일	3,190
두야리 339-8	대 8,278	7	298,900	20/1,000	294	21.01.01.~01.18.	352	18일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39-5	전 797	58	2,401,200	10/1,000	22,827	21.01.19.~12.31.	27,392	347일	30,800
두야리 339-8	대 8,278	7	298,900	10/1,000	2,841	21.01.19.~12.31.	3,409	347일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39-5	전 797	58	2,656,400	10/1,000	26,564	22.01.01.~12.31.	31,876	365일	35,840
두야리 339-8	대 8,278	7	331,100	10/1,000	3,311	22.01.01.~12.31.	3,973	365일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39-5	전 797	58	2,517,200	10/1,000	3,724	23.01.01.~02.23.	4,468	54일	5,020
두야리 339-8	대 8,278	7	314,300	10/1,000	464	23.01.01.~02.23.	556	54일	
총합계									214,52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3년 9월 22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 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변상금(예상) 산출 내역, 첨부서류 1,2,3 양식은 태안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알림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041-950-21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